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6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조승환·서일준·이종배

이성권 · 조경태 · 정희용

김성원 · 곽규택 · 김태호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14%, 약 7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음.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 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은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 군대,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 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 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연도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으로서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8조).
- 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

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 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경계선지 능인 평생교육 관련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평생교 육 및 관련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①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경계선지능

- 인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 호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 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경계 선지능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 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운영
-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
- 5.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